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8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7. 9.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7. 9.
- 다. 상정 및 보류일자 : 2025. 7. 17.
- 다. 재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개정(21.12.7.전부 / 24.3.26.일부)됨에 따라 제명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조, 제5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7조)
 - “예방기능”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다목, 안 제2조제5항)
 - “경력보유여성 등” 개념에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추가
 -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는 제반활동인 경력유지” 정의 신설

- 지원사업의 상위법 근거조항 반영(안 제7조 각항)
 - 변경 : 법제9조 → 법제10조, 법제10조제2항 → 법제13조제2항,
 법제11조 → 법제14조, 법제12조 → 법제15조
 - 신설 : 법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등 지원사업
-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 “경력유지” 등으로 순화 변경·정비
 (조례명 및 안 제1조~제8조)
 -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조례명)
 - 경력단절여성등 → 경력보유여성등(안 제2조제1항 등)
 - 경력단절예방등 → 경력유지(안 제2조제5항 등)
- 창업 관련 구체적 지원내용 신설(안 제7조제7항)
- 위탁업무의 지도점검 신설 등 관리방안 강화(안 제8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순화와 창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자리 잡았으나, 이 용어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라는 용어가 결합하여 차별적 용어로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용어로 지적된 바,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제·개정하였음.

-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경력을 보유한 이미지로 치환하고자 ‘경력보유’, ‘경력유지’ 용어 정비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와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 개정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법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법 제17조에 의해 지정된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훈련,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등 여성의 경제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748-1
----------	-------

2026. 4. 17.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체계에 맞추어 “경력유지” 등의 용어를 “경력 단절 예방”으로 정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출된 개정안(원안)대로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경력유지” 용어를 “경력단절 예방”으로 변경 및 정비
 - 1)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명)
 - 2) “경력유지” → “경력단절 예방”(안 제1조 ~ 제8조)
-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를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을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5호) 중 ““경력유지”란”을 ““경력단절 예방”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을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한다.

제4조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을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을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력유지 등”을 “경력단절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촉진 및 경력유지”를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에 따라 남양주시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u>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경력단절여성등</u>”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신설>	<u>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u>를 ----- <u>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u>-----. 제2조(정의) ----- ----- ---. 1. “<u>경력보유여성등</u>”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u>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u>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 1.(개정안과 같음) 가.·나. (개정안과 같음)

	<u>취업을 희망하는 여성</u> <u>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u> <u>없는 여성 중에서</u> <u>취업을 희망하는 여성</u>	
	<u>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u> <u>있는 여성</u>	<삭 제>
2. “경제활동 촉진”이란 <u>남양주시 공공기관 ·</u> <u>교육기관 · 기업 등이</u> <u>경제활동 참여를 지원</u> <u>하고 경력단절을 방지</u> <u>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u> <u>가지</u> 활동을 말한다.	2. ----- <u>남양주시 · 공공기관 ·</u> <u>교육기관 · 기업 등이</u> <u>여성의 ----- 지원하기</u> ----- ----- <u>제반</u> ----- -----.	2. (개정안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4. “여성고용업종”이란 <u>「근로기준법」 제11조</u> <u>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u> <u>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u> <u>가 상시 고용되어</u> <u>있는 남양주시에 소재</u> <u>한 업종</u>을 말한다.	4. -----이란 「<u>근</u> <u>로기준법」 제11조-----</u> ----- <u>사업 또는 사</u> <u>업장-----</u> ----- ---- <u>소재한 업종</u>---- --.	5.
<신 설>	5. “경력유지”란 여성 <u>이 혼인 · 임신 · 출산 ·</u> <u>육아와 가족구성원의</u> <u>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u> <u>을 이유로 경제활동을</u> <u>중단하는 것을 방지하</u> <u>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u> <u>활동을 말한다.</u>	3. “경력단절 예방”이란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 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u>경력단절여성등의</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u>여성의 경제활동 촉</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u>촉진</u>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
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
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
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
제 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

진 및 경력유지를 -----

-.

② -----
-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
---- 여성의 경제활동 촉
진 및 경력유지를 -----
--- 개선 및 고용안정---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
시행계획-----

-----.

② (현행과 같음)

③ ----- 요
청받-----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과 경력단절 예방을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사용자의 책무) ----
----- 촉진
과 경력단절 예방을 ----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 촉진과

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 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경력유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

----- 임시 조사-----.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를 -----.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4.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경력단절 예방 -----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u>지도·감독하고, 필요한</u> <u>경우 수탁기관에 그 운영</u> <u>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u> <u>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u> <u>공무원에게 그 운영 상황</u> <u>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u> <u>검사하게 할 수 있다.</u>	
--	--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18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이경숙 의원 등 7명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돌봄통합 지원 목적, 정의 및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통합지원 창구, 협의체, 실무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5조)
-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통합지원창구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통합돌봄 사업은 다양한 기관과 인력이 연계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역할 중복이나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과 단계적 사업 확대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9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박윤옥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 기능 정비(안 제2조)
- 위원회 운영체계 명확화(안 제4조~제8조)
- 위원회 운영 실무규정 정비(안 제9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구체화(안 제2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종합계획,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 주요정책 전반을 포괄하도록 한 점은 정책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기능적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은 정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0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박윤옥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임의 변경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사후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기존)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변경)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안 제4조, 안제5조)

-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사전점검대상, 점검시기 등 규정
(안 제6조~제8조)
- 편의시설의 사후점검, 점검반 및 업무의 대행 규정(안 제9조~제10조의2)
- 점검요원의 의무 등, 관계 공무원의 의무, 시설주의 의무 규정
(안 제11조~제13조)
- 점검결과의 보고, 점검결과의 반영 및 수당 등 규정 (안 제14조~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기존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임의 변경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사전점검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편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1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박윤옥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촉진 시책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쾌적한 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기본개념 정비 규정(안 제1조~제4조)
-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부문별 실천 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5조~제7조)
-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규정(안 제8조~제11조)

○ 물순환 촉진 시책 추진 규정(안 제12조~제16조)

○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및 보조금 지원규정(안 제17조~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기후변화 심화 및 도시화 등 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부문별 실천계획 및 평가체계를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또한,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안 및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비점오염 저감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등은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물관리 및 물순환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희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922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전해연 의원 등 7명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유희공간의 발굴·이용·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지원사업 추진 등 (안 제6조)
- 사업자 선정 등, 임대,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유�휴공간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공공유�휴공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공유�휴공간 정보 제공 및 생산설비 설치비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 기준, 공유재산 임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또한 관계 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공간 및 시설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유허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차원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아울러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3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이경숙 의원 등 7명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공원 및 녹지 관리기준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제3조)
- 제2장 도시공원의 조성 및 공원시설의 설치 (안 제4조~제6조)
- 제3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안 제7조 ~제9조)
- 제4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이관 및 위탁·운영(안 제10조~제13조)

- 제5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 활성화 및 시민참여(안 제14조~제15조)
- 제6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및 점용(안 제16조~제23조)
-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안 제24조~안 제31조)
- 제8장 보칙
 - 준용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공원 및 녹지 관리기준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주제공원 유형을 규정하여 공원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조성 및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원 및 녹지의 이용 활성화와 공원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원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리 방향 검토와 함께 부서 간 협업체계 유지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8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 추진부서가 변경되어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전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예산전출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 제5조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를 필요한 경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성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적인 전출 근거를 두는 입법 방향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39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돌봄, 숙제지도, 문화·예·스포츠 등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등
나. 위탁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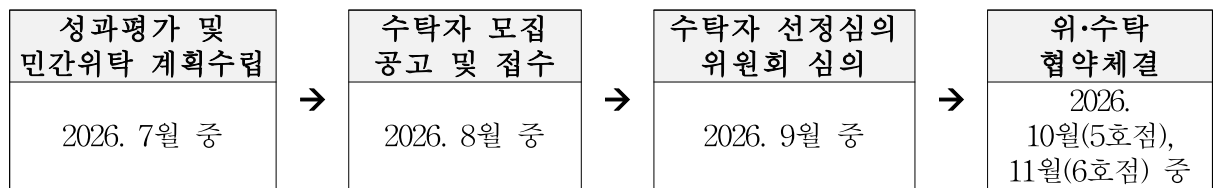
연번	구분	위치	면적(㎡)	정원	現 수탁기관
1	재위탁 (5호점)	순화궁로 458-58 (별내동, 별가람마을 1-8단지)	87.78	20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현아)
2	재위탁 (6호점)	별내3로 64-16 (별내동, 별내별빛마을 3-6단지)	83.23	20	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한동윤)

다. 민간위탁 기간

연번	구분	설치일	위탁기간	
			기존	재위탁 시
1	5호점	2021.11.01.	2021.11.01. ~ 2026.10.31.(5년)	2026.11.01. ~ 2031.10.31.(5년)
2	6호점	2021.12.01.	2021.12.01. ~ 2026.11.30.(5년)	2026.12.01. ~ 2031.11.30.(5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 추진 절차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위탁경비 : 약 150,037천원 (1개소/년)

산출근거		합계(천원)	비고
계		150,037	
인건비	· (기본급) 센터장 : 3,342천원 × 12개월 × 1인 · (기본급) 돌봄교사(전일제) : 3,102천원 × 12개월 × 1인 · (기본급) 돌봄교사(시간제) : 1,551천원 × 12개월 × 1인 · (호봉제) 개인별 호봉 적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초과분 · (명절수당) 개인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 60% × 2회 ※ 월급여,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약 123,597	기본인건비 + 추가인건비 (호봉적용) + 명절수당
운영비	· (1,530천원 × 12개월) + (500천원 × 2개월)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수수료, 여비 등	19,360	냉난방비 포함
돌봄 프로그램비	· 200천원 × 12개월	2,400	
급식비	· 4,500원 × 20명(아동 정원수) × 52일(방학일수) ※ (지원기준) 중식 1식 단가 9,000원의 50% 보조	4,680	*방학일수(안) 겨울방학 : 35일 여름방학 : 17일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돌봄종사자 채용, 돌봄 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및 돌봄 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
서비스 공급의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 분	검 토 의 견
공공성 및 안정성	사업 운영 가능
경제적 효율성	○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관리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 ○ 성과지표의 객관화 및 정당화로 자체평가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제34조의4(시설의 안전 점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총 합 의 견	○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 ○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 ○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음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사.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성과평가

- 근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
- 대상 :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5호점, 6호점)
- 아동권리보장원 평가 결과 세부 점수 비공개로 7월 중 자체평가 예정
 - ※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통과’(60점 이상 득점)

아.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
-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자. 향후계획

- 2026. 7. : 다함께돌봄센터 5, 6호점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
- 2026. 8. :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서류 접수
- 2026. 9.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6. 10. :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인수인계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26. 11. :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인수인계 및 위·수탁협약 체결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이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절차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40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재계약 6개소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파라곤키즈	서기영	천마산로 65, 호평파라곤관리동	178	38	'26. 7. 2. ~ '31. 7. 1.
라운사랑	김예리	경춘보학1길 7, 라운프라이빗 4단지 내	156.4	29	'26. 9. 21. ~ '31. 9. 20.
다산지금	박영신	다산중앙로82번길 87-17, 다산센트럴파크 6단지 내	363.63	84	'26. 10. 11. ~ '31. 10. 10.
다산자이 폴라리스	최민경	다산순환로 242, 자연앤자이아파트 내	318.19	73	'26. 10. 11. ~ '31. 10. 10.
행복나무	심상미	순화궁로 458-58, 단지 내 (별가람마을 1-8단지)	621.54	80	'26. 10. 11. ~ '31. 10. 10.
다산사랑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 복지재단 (정혜경)	다산중앙로123번길 47, 다산메트로 3단지 내	430.6	69	'26. 11. 1. ~ '31. 10. 31.

○ 재위탁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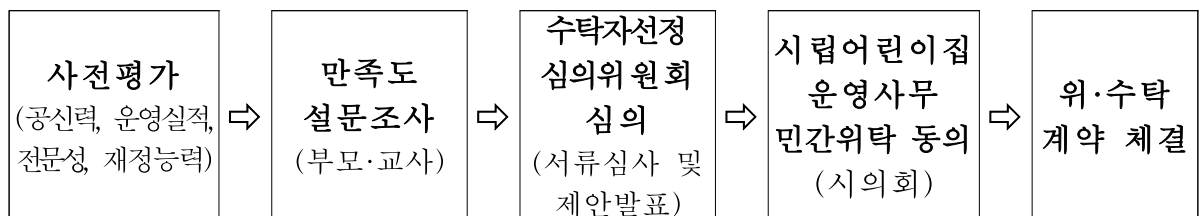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비고
시립키든	별내3로 64-16, 별빛마을 3-6단지	820.68	80	'21.11.1. ~ '26.10.31.	'26.2차 수탁자심의위원회 (예정)

나. 위탁사무 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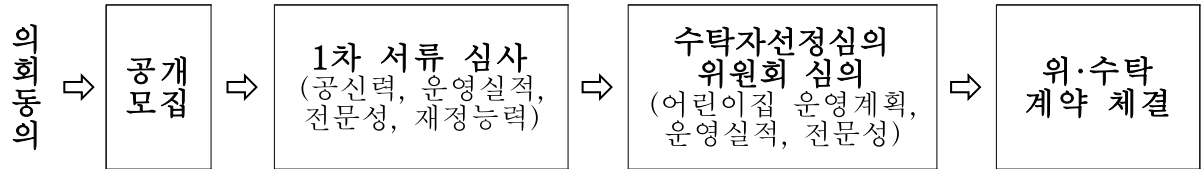
다.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

○ (재위탁)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 최종결과 70점 이상, 1·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

라.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소요예산 : 6,096,820천원(2026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

【2026년도】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 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6,096,820	4,181,807	1,915,013
1	파라곤키즈	38	11	670,866	446,446	224,420
2	라운사랑	29	11	534,115	379,062	155,053
3	다산지금	84	23	1,151,968	841,155	310,813
4	다산자이 폴라리스	73	16	988,455	661,643	326,812
5	행복나무	80	22	1,084,207	753,913	330,294
6	다산사랑	69	13	844,595	528,911	315,684
7	키든	80	14	822,614	570,677	251,937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적 효율성	○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바.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

연번	어린이집명	최종 결과	계* (100점)	1차 평가(40점)*	2차 평가(60점)
				사전평가, 부모·교직원 만족도 조사, 회계점검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1	파라곤키즈	적격	90.6	40	50.60
2	라운사랑	적격	87.2	40	47.20
3	다산지금	적격	84.2	36	48.20
4	다산자이 폴라리스	적격	85.2	39	46.20
5	행복나무	적격	82.0	35	47.00
6	다산사랑	적격	87.2	36	51.20

*가산점(최대2점) 포함 점수

사. 향후계획

- 2026. 4. : (재위탁1개소)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6. : 2026년 제2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
- 2026. 6. ~ 10. : (어린이집별 상이)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사전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본 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41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 출연 연구기관인 남양주시정연구원 내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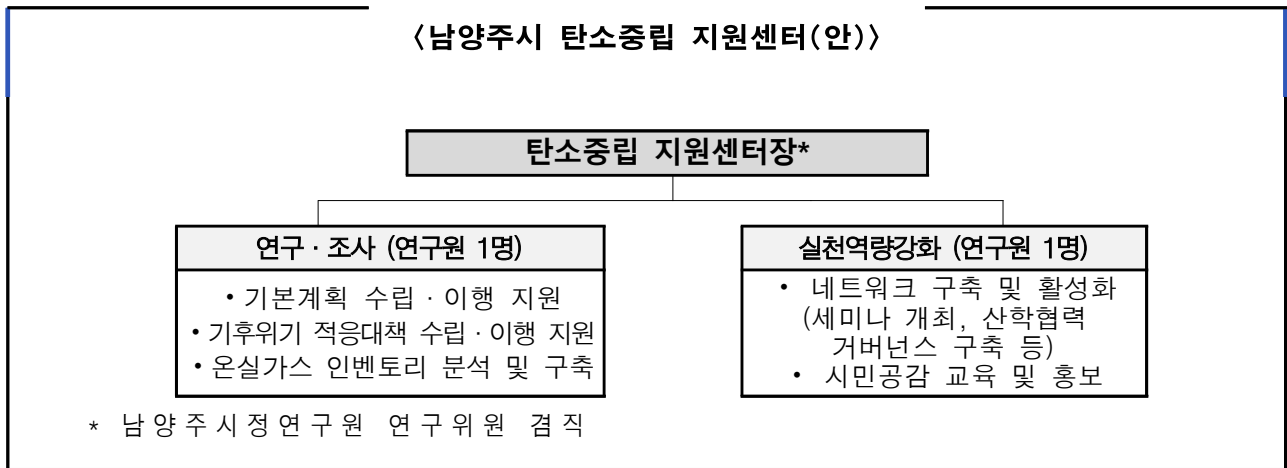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지자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 탄소중립 행사 개최 및 교육·홍보 등

나. 위탁시설 개요

○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다. 위탁 기간

○ 2026. 5. 1.~2030. 12. 31.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연간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비 100%)

- 인건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연구비용 등
- ‘27년 국고보조금 신청 완료, 승인 시 매년 국고 50%(100백만원) 지원 가능

바.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사항		검토내용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단계	특성	판 단 내 용	분 류	결 정
	①	소관사무	시장의 사무인지?	해당	적정
	②	공공성 공익성	행정서비스가 공공재에 해당하는지?	해당	적정
	③	非권리, 의무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는지?	해당	적정
	④	전문적, 지속적사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속적 사무인지?	해당	적정
	⑤	전체적 사무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지?	해당	적정
	⑥	경쟁 가능성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비해당	적정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의 수혜대상	•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가 편중 되지 않았는지?		☒ 예	☐ 아니오
	서비스의 공급 지속성	• 장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 예	☐ 아니오
경제적 효율성	• 위탁 시 시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센터장을 겸직하므로 행정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연구인력 확보에 사업비 활용 가능				
전문성 기술성	• 시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가능				
성과측정의 용이성	• 수시 협의 및 과업 방향 조정이 용이하며, 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가능				
관리·운영의 투명성	•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 및 주요 현안 연구를 지속 수행하므로 투명한 지원 체계 유지 가능				
총괄의견	○ 남양주시정연구원의 경우 시의 정책방향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함.				

사.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그간 추진현황

- 2025. 4. : 「제1차 남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26. 3. :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계획 보고

○ 향후계획

- 2026. 5. : 위수탁계약 체결
- 2026. 7. :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그 사무를 남양주시정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운영이 가능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센터 운영이 장기간(최대 5년) 지속되는 만큼, 위탁 이후에도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지원 기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실천 확산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내실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2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7조제4항, 제5항)

-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개정 등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로수 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 체납 발생 시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